

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76호로 2017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조항  
정비(안 제1조)
-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의 확대(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시행령 제14조”에서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고
  - 안 제10조제4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위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